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임금체불사업주 소명기회 부여

- 명단공개 관련 498명, 신용제재 관련 787명 -

-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관련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금년 2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 ▲ 명단공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 ▲ 신용제재: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 이번 소명기회 부여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가 도입 (‘12.8.2)된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 소명기회 대상자는 명단공개 관련 498명, 신용제재 관련 787명이다.

- 소명기회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사업주에게는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명단공개 또는 신용제재 내용, 제외대상자 기준, 공개기간 및 방법 등을 고지한다.
 - 본인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외대상자에 해당되는 체불 사업주는 금년 5월 31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로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 소명기회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은 명단공개 약 8,471만원 (신용제재 6,579만원)이며, 1억원 이상 체불금액*도 명단공개 76명(신용제재 116명)으로 나타났다.
 - * 최고 체불금액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모두 2,082백만원
- 법령 위반회수는 평균 명단공개 2.9회(신용제재 2.8회)이며, 3년간 6회 이상 위반자도 명단공개 22명(신용제재 29명)으로 나타났다.
 - * 최고 위반회수는 명단공개 10회, 신용제재 12회
-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모두가 상시 5명~29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303명(60.8%) 및 495명(62.9%)으로 가장 많았고, 상시 100명 이상의 사업장도 각각 25명, 28명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소명기회 절차를 거친 후 임금체불정보심의 위원회를 개최(6월경)하여 제외대상자*를 제외하고, 실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체불청산 등 : <붙임1> 참조

-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3년간 체불총액”을 관보, 인터넷홈페이지, 지방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게 된다.
- 또한, 신용제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 각 금융기관에서는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수집된 체불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약 30만명에 달하고, 임금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러 체불로 인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추천 제한과 함께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주요 내용

□ 도입배경

-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해 12.2.1. 근로기준법을 개정('12.8.2.시행)하여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를 도입
 - * '12.6.21.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12.8.2.시행)하여 명단공개·신용제재 제외사유, 명단공개 내용·방법,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을 규정

□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주요내용

- (대상)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 (공개내용) 체불사업주의 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시행령 제23조의3)
- (공개 방법 및 기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시행령 제23조의3)

□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주요내용

-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체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체불사업주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주는 제도(법 제43조의3)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사무관(☎ 02-2110-73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절차)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종합신용정보기관(은행연합회)이 요구자의 성명·상호·주소·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목적을 기재한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은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형태로 체불자료를 작성·제공(시행령 제23조의5)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외사유

- 체불임금을 전액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를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체불 청산을 유도하고,
- 체불사업주의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23조의2, 제23조의4)

명단공개·신용제재 제외사유(근기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3조의4)

- ①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②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 ③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④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⑤ (명단공개)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용제재)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 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명단공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2>

소명기회 대상 체불사업주 유형별 분석

□ 규모별 구분

사업장 규모	명단공개(명, %)		신용제재(명, %)	
	계	498	100.0	787
300명 ~ 499명	2	0.4	2	0.3
100명 ~ 299명	23	4.6	26	3.3
30명 ~ 99명	103	20.7	135	17.1
5명 ~ 29명	303	60.8	495	62.9
5명 ~ 미만	67	13.5	129	16.4

□ 체불금액별 구분

체불금액(3년간 총액)	명단공개(명, %)		신용제재(명, %)	
	계	498	100.0	787
5억원 이상	3	0.6	4	0.5
3억원 ~ 5억원 미만	7	1.4	7	0.9
1억원 ~ 3억원 미만	66	13.3	105	13.3
5천만원 ~ 1억원 미만	158	31.7	217	27.6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264	53.0	454	57.7

* 최고 체불금액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모두 2,082백만원

□ 사업종류별 구분

사업종류	명단공개(명, %)		신용제재(명, %)	
	계	498	100.0	787
제조업	163	32.7	254	32.3
건설업	98	19.7	160	20.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2	10.5	68	8.6
도소매업	50	10.1	88	11.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7	5.4	39	4.9
부동산 및 임대업	26	5.2	39	4.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1	4.2	28	3.6
교육서비스업	14	2.8	26	3.3
숙박 및 음식점업	13	2.6	21	2.7
사업시설관리업	10	2.0	17	2.2
운수업	9	1.8	14	1.8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8	1.6	18	2.3
금융 및 보험업	3	0.6	3	0.4
광업	2	0.4	3	0.4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서비스업	1	0.2	4	0.5
하수폐기물 처리업	1	0.2	3	0.4
농업, 임업 및 어업	-	-	2	0.3

□ 유죄확정 수준별(벌금 금액별) 구분

사업장 규모	명단공개(명, %)		신용제재(명, %)	
	명	%	명	%
계	498	100.0	787	100.0
징역(집행유예 포함)	8	1.6	9	1.1
1천만원 이상	71	14.3	80	10.2
5백만원 ~ 1천만원 미만	234	47.0	300	38.1
1백만원 ~ 5백만원 미만	173	34.7	383	48.7
1백만원 미만	12	2.4	15	1.9

□ 유죄확정 횟수별 구분

사업장 규모	명단공개(명, %)		신용제재(명, %)	
	명	%	명	%
계	498	100.0	787	100.0
8회이상	4	0.8	6	0.8
6회 ~ 7회	18	3.6	23	2.9
4회 ~ 5회	91	18.3	136	17.3
2회 ~ 3회	385	77.3	622	79.0

* 유죄확정 평균 횟수는 명단공개 2.9회, 신용제재 2.8회

* 최고 위반횟수는 명단공개 10회, 신용제재 12회

<붙임3>

체불임금 관련 통계자료

□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근로자수	155	301	292	277	194	249	301	276	279	285
금액	5,211	10,426	10,291	10,297	8,403	9,560	13,438	11,630	10,874	11,772

주) '04년부터 체불근로자 1인 이상 집계('03년까지는 5인 이상)

□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 현황

○ 사건 접수 및 처리

(단위 : 개소, 건, 명, 백만원)

연월	구분	신 고			처 리			처리종
		계	신규	이월	총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12.12월	사업장수	110,479	108,311	3,546	107,637	84,635	28,238	4,453
	건수	186,624	180,526	6,098	179,278	121,664	57,614	7,346
	근로자수	284,755	274,971	9,784	273,423	172,003	101,420	11,332
	체불금액	1,177,166	1,119,824	57,342	1,112,443	625,164	487,279	64,723
'11.12월	사업장수	116,176	113,639	4,133	113,978	93,781	25,098	3,559
	건수	193,536	186,668	6,868	187,415	135,366	52,049	6,121
	근로자수	278,494	268,401	10,093	268,683	188,098	80,585	9,811
	체불금액	1,087,416	1,037,107	50,309	1,029,968	610,482	419,486	57,448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체불액이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

○ 임금내역별·업종별·규모별 체불임금내역('12.12월 기준)

금 품 별	임금	퇴직금	기타금품	-
		56.9%	38.1%	5.0%
주요업종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32.6%	20.8%	12.9%
규 모 별	5인 미만	5~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인 이상
		22.6%	43.4%	18.1%